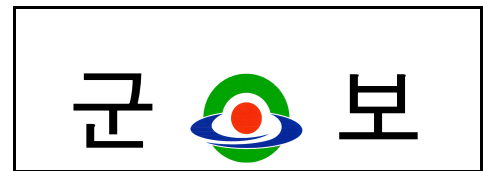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44호 2019. 1. 24.(목)

선 람	기 관 의 장

입법예고

-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9-157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01월 24일

예 천 군 수



1. 개정 이유

- 모노레일 등 신규 시설물이 설치됨에 따라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휴관일 등 운영사항을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곤충생태원을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 명칭 변경

-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시설의 종류 추가 및 명칭 변경(안 제4조)

- 시설의 종류 추가 : 곤충멀티체험관, 놀이공원, 모노레일
- 시설의 명칭 변경 : 곤충생태원 ⇨ 야외생태원

다. 모노레일 운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안 제7조 ~ 안 제8조, 별표)

- 모노레일 운행기간 및 탑승료

- 라. 휴관일 신설(안 제6조)
- 마. 관람료 인상 및 할인권 조정(별표)
- 바.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사. 무료이용 대상 조정(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해당 없음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마. 입법예고 결과 :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곤충연구소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3610k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곤충연구소(경북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
 - 전화 : 054-650-8261, 팩스 : 054-652-5877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 중 “곤충바이오생태원”을 “곤충생태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곤충바이오생태원”을 “곤충생태원”으로 하고, “고향리”를 “고향리”로 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곤충멀티체험관
4. 야외생태원
5. 놀이공원
6. 모노레일 등

제5조에 제7호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탑승료”란 모노레일을 탑승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이용요금”이란 관람료와 탑승료를 총칭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제6조제1항제2호(중전의 제1호) 중 “따른공휴일”을 “따른 공휴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모노레일 운행은 3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이용요금 및 이용요금의 감면) ①곤충생태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관람표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노레일을 탑승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탑승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각종 행사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무료관람)”을 “(무료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1~3급 장애인”을 “1~3급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상이군경 1~3급 해당자는 보호자 1인 포함)”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자녀 가족

제9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중전의 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탑승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모하기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기타 전시물 또는”을 “군수가 기타 전시물이나”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고성, 난무 등 ”을 “고성 또는 소란행위 등”으로 한다.

제14조 중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을 “더럽히거나 손상하였을 때는”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곤충생태원 관람료

구 분	관람료		
	일 반	아동·청소년	예천군민
보 통 권	5,000원	4,000원	50% 할인
할 인 권	4,000원	3,000원	

※ 할인권 : 단체, 만65세 이상인 사람, 군인, 장애인, 다자녀가족, 동절기(11월~2월)

모노레일 탑승료

구 분	탑승료	
	일 반	아동·청소년
보 통 권	5,000원	4,000원
할 인 권	4,000원	3,000원

※ 할인권 : 단체, 만65세 이상인 사람, 군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족, 예천군민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예천군 곤충바이오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u>	<u>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u>곤충바이오생태원</u>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곤충생태원</u>----- ----- -----.
제2조(위치) 예천군 <u>곤충바이오생태원</u>(이하 "<u>곤충생태원</u>"이라 한다)은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u>고향리</u> 577번지) 일원에 둔다.	제2조(위치) -----<u>곤충생태원</u>----- ----- -----<u>고향리</u>----- -----.
제4조(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곤충생태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신설> 2. (생략) 3. <u>곤충생태원 등</u> <신설> <신설> <신설>	제4조(시설의 종류) ----- ----- -----. 1. (현행과 같음) 2. <u>곤충멀티체험관</u> 3. (현행 제2호와 같음) <삭제> 4. <u>야외생태원</u> 5. <u>놀이공원</u> 6. <u>모노레일 등</u>
제5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제5조(용어의 정의) -----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제6조(개관 및 휴관일) ① 곤충생태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일반인에게 관람 및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2. (생략)

<신설>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곤충생태원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7. “탑승료”란 모노레일을 탑승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이용요금”이란 관람료와 탑승료를 총칭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일) ① -----

-----.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

---- 따른 공휴일-----

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

-----.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생 략)

제8조(관람료) 곤충생태원 시설
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
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
며, 관람료는 보통권과 할인권
으로 구분한다.

<신 설>

제9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다.

1. (생 략)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3급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3. 모노레일 운행은 3월 1일부
터 11월30일까지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이용요금 및 이용요금의
감면) ① 곤충생태원을 관람하
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관람
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모노레
일을 탑승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탑승료를 추가로 납부하
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각종 행사 등 기타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무료이용) ① -----

-----.

1. (현행과 같음)

2.-----
-- 1~3급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3.-----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1~3급 해당자는 보호자 1인

4. 5. (생략)

<신설>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제11조(편의시설 운영) 군수는 곤충생태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곤충생태원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2조(관람 및 시설 사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2. (생략)

3. 기타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포함)

4. 5. (현행과 같음)

6. 다자녀 가족

7. -----
-----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탑승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편의시설 운영) -----
----- 위
해 -----

-----.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람 및 시설 사용의 금지) -----

-----.

1. 2. (현행과 같음)

3. 군수가 기타 전시물이나 -----

-----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

<u>정하는 자</u>	<u>고 판단한 사람</u>
제13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곤충생태원 안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4. <u>고성, 난무 등</u>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4조(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시설 사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u>파괴하거나</u> <u>오손하였을</u>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행위의 제한)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고성 또는 소란행위 등</u> ----- ----- 제14조(손해배상) ----- ----- - <u>더럽히거나 손상하였을</u> 때는 ----- -----.